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4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1.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근거 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, 주민자치회의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 폐지·제정에 따른 현행화: 안 제1조, 제5조, 제18조, 제21조

(기존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
(개정)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의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행위 근거 마련: 안 제8조

(신설) 제2항: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·홍보 부스, 어린이 놀이기구·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(신설) 제3항: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·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·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어린이

놀이기구·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다. 역량강화사업 구체화 등: 안 제22조

(기준)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(개정) 군수는 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, 워크숍, 선진지 견학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 기관 없음

라. 기타 :

1) 입법예고(2025. 4. 14. ~ 2025. 5. 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– 평창군 공고 제2025-600호, 행정담당관-9493(2025. 4. 14.)호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6488(2025. 4. 23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6488(2025. 4. 23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5066(2025. 4. 16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7194(2025. 5. 9.)호]

6)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7931(2025. 5. 26.)호]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”로, “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·면”을 삭제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.)」 제28조”를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특별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공직선거법 제19조”를 “「공직선거법」 제1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21조제1항 제3호”를 “제21조 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·홍보 부스,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 등을

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·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·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어린이놀이기구·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특별법 제29조제2항”을 각각 “특별법 제4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3항 중 “주민”을 “분과위원회 구성원”으로, “교육”을 “교육, 워크숍, 선진지 견학”으로, “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<u>제21조제1항 제 3호</u>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 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제21조제1항제3호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8조(권한) (생 략)</p>	<p>제8조(권한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주민자치회는 <u>제1항제3호</u>에 따른 주민총회 개최 또는 자치 계획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험 · 홍보 부스, 어린이놀이기 구 ·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③ <u>제2항에 따라 설치한 체험 · 홍보 부스는 관내 기관 · 단체의 비영리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, 어린이놀이기 구 · 시설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18조(정치적 중립) 주민자치회 의 위원은 <u>특별법 제29조제2항</u> 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,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 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</p>	<p>제18조(정치적 중립) ----- ----- <u>특별법 제40조제5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40조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(이하 “자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 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
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

④ 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자치 회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은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의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김두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